

제2866호
2021. 9.2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58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588호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5
제158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29
제159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33

[규 칙]

제744호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	36
--	----

[훈 령]

제17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46
제1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48
제177호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전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	59

[입법예고]

제2021-7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	----

● 고 시

제2021-11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70
-------------------------------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효율적으로 충족시킬”을 “충족시킬”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유공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법령”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 -----충족시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1. 유공공무원-----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4. ~ 14. (생략)	5. ~ 15. (현행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 변경에 따라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원건강검진비 및 단체보장보험 지원 근거 마련(제7조제4호)
- 불필요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직위 삭제(제8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 정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는 여러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에게”를 “구의회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둔다.”를 “1명을 둔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사고로”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에 보고한다.”를 “소환위원회에 보고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총괄조정관,”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업무 소관국장”을 “지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을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31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로 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민원팀장”을 “동정부1팀장”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시민친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하고, “임면”을 “임명”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혁신센터”를 “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를 “오후”로 하고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장이 된다.”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를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 국장이 되며”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가족과장이 된다.”를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복지친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5호를 제3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복지친화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문보건팀장”을 “통합돌봄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관할 지역의 내의”를 “관할 지역 내의”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4항제6호를 제5조제4항제5호로 하고, 제5조제4항제7호를 제5조제4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6항”을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관리”를 “공동주택관리”로 하고,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도심재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공사 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호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을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2조 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3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매년 9월 10일까지”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한 시 생활

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시장경제과장”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시장경제과 시장경제 팀장”을 “소관부서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56사단 218연대장”을 “56사단 218여단장”으로 하고, “기무반장”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218연대 작전과장”을 “218여단 2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1조제1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로 하고,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군경 합동상황실”로 한다.

별표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안전중구 추진담당(팀)”을 “재난통괄담당(팀)”으로 하고, “총무담당(팀)”을 “행정지원담당(팀)”으로 하고, “시장경제과장”을 “전통시장과장”으로 하고, “시장경제담당(팀)”을 “전통시장1팀”으로 하고,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생기획담당(팀)”을 “식품기획담당(팀)”으로 하고, “공보실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하고, “홍보담당(팀)”을 “홍보소통담당(팀)”으로 하고, “공보담당(팀)”을 “언론담당(팀)”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을 “시민친화국장, 생활복지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별표9 제18호라목”을 “별표9 제8호라목”으로 한다.

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를 “일반임기제공무원중의”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 중 “직원사기양양과”를 “직원의 사기를 복돋고”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서”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생활복지친화국장”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공보실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제목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강도시과장”을 “시민건강과장”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제2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회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제2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5조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5조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11조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4조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 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4조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삭제),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2.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중구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제5조 ⑤ 중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중구의 지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 ⑤ 중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2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의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2 ③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의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3조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제5조의3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복지환경국장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3조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제5조의3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소관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3조 ④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은 행정민원팀장이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3조 ④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은 동정부1팀장이 보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제12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③ 위원장은 시민친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제12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중구 교육혁신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센터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중구 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1조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제3조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제3조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 국장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생활복지친화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조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기획팀장, 방문보건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제5조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복지친화국장으로 한다. 제4조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기획팀장, 통합돌봄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제5조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제7조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된다. 제7조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4조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생활도시친화국장과 도심재생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14조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생활도시친화국장과 건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가로환경과장, 도시시설과장, 안전치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③ 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가로환경과장, 도시시설과장, 치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① 구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제11조의 금지행위 발생 현황과 제12조 제2항의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① 구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제11조의 금지행위 발생 현황과 제12조제2항의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한 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경제과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경제과 시장경제 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해당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제3조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관할 군부대의 장(56사단 218연대장, 2대대장, 기무반장) 제5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중구청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중구청 안전치수과장 3. 경찰담당 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218연대 작전과장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제3조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관할 군부대의 장(56사단 218여단장, 2대대장) 제5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중구청 행정지원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3. 경찰담당 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218여단 2대대 정작과장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제12조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1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 제12조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② 전항의 공무원은 총무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제7조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민친화국장, 생활복지친화국장, 생활도시친화국장, 경제친화국장, 보건소장 제7조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 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장려수당) 별표9 제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중의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4. 그 밖에 직원사기양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4. 그 밖에 직원의 사기를 복돋고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전염병에 걸려서 해당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전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전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복지환경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생활복지친화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제7조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공보실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제7조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건강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유형
 - 인용 규정의 변경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인용 용어 변경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미반영 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타자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9호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 또는 관내 적절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
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콘텐츠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선정심사의결을 거쳐 적격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최근 스마트폰 사용증가 등 미디어 환경의 급변화로 인터넷 동영상 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 ~ 제2조)
- 인터넷방송국의 위치를 규정함(제3조)
- 인터넷방송국의 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 인터넷방송국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사용료에 대해 규정함(제5조)
-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제10조)
- 콘텐츠 제공 및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함(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90호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

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에 대한 구의 책무와 구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 규정함(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에 관해 규정함(제8조).

[규 칙]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는 여러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치수과”를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건강관리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별표 5 중 “치수과”를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건강관리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조례 제4조제2항”을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기금운용관-복지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청소행정과장”을 “기금출납원-기금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관련국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소관 국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이하 “총무과”라 한다)”를 “행정지원과(이하“행정지원과”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7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좌·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을 “보좌·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심사필”을 “기획조정과장 심사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 4] <table border="1"> <tr> <td>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td><td>· 치수과</td></tr> </table> <table border="1"> <tr> <td>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td><td>· 중구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td></tr> </table> [별표 5] <table border="1"> <tr> <td>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td><td>· 치수과</td></tr> </table> <table border="1"> <tr> <td>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td><td>·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td></tr> </table>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치수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중구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치수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 4] <table border="1"> <tr> <td>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td><td>· 생활안전담당관</td></tr> </table> <table border="1"> <tr> <td>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td><td>· 중구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과</td></tr> </table> [별표 5] <table border="1"> <tr> <td>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td><td>· 생활안전담당관</td></tr> </table> <table border="1"> <tr> <td>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td><td>· 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과</td></tr> </table>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생활안전담당관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중구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생활안전담당관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치수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중구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치수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건강관리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생활안전담당관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중구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생활안전담당관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의약과,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복지환경국장이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①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소관 국장이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18조 ④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총무팀장**, 동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분야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감사기획홍보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재정	세입세출예산	기획예산과
재정	기금	기획예산과
재정	중기재정	기획예산과
재정	재정공시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총무과
-------	-----------	-----

통계	통계연보	전산정보과
통계	사회조사	전산정보과
통계	사업체조사	전산정보과
통계	인구통계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18조 ④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팀장**, 동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관분야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감사기획홍보	주요업무계획	기획조정과
재정	세입세출예산	기획조정과
재정	기금	기획조정과
재정	중기재정	기획조정과
재정	재정공시	기획조정과

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
-------	-----------	-------

통계	통계연보	기획조정과
통계	사회조사	기획조정과
통계	사업체조사	기획조정과
통계	인구통계	동정부과

생활안전	민방위 소집계획	자치행정과	생활안전 담당관
경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시장경제과	전통시장과
식품위생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위생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안내	위생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위해식품검사결과	위생과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식품 공중위생검사결 과	위생과	보건위생과
문화	문화재 현황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경제	공장 현황	시장경제과	도심산업과
경제	대규모 점포 현황	시장경제과	전통시장과
경제	담배도소매업 현황	시장경제과	도심산업과
경제	옥외광고업 현황	도시 디자인과	가로환경과
생활안전	체육시설업 현황	교육체육과	동정부과
생활안전	재폐시장 현황	시장경제과	전통시장과
생활안전	동물병원 현황	시장경제과	도심산업과

사회복지	보육시설 현황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보육시설 현황	여성보육과
사회복지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복지자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복지자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사회복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자치행정과	사회복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동정부과
식품위생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시장경제과	식품위생	축산물 판매업소 현황	도심산업과
식품위생	모범음식점 현황	위생과	식품위생	모범음식점 현황	보건위생과
감사기획홍보	구장백서	기획예산과	감사기획홍보	구장백서	기획조정과
감사기획홍보	구보	공보실	감사기획홍보	구보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원회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 구의원 2명, 중소기업인 3명 이내, 위탁운영자 1명, 관련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위원회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관련국장 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 , 구의원 2명, 중소기업인 3명 이내, 위탁운영자 1명, 관련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이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소를 이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이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소를 이		

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서장은 이용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서장은 이용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하되,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하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되 서울특별시 중구 총무과(이하 “총무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6조의7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과(이하 “행정지원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6조의7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용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과, 보건소별로 구성·운영한다. 단 보좌·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동은 시민친화국에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구의회사무과, 보건소별로 구성·운영한다. 단 보좌·보조기관인 감사담당관, 생활안전담당관 및 동은 시민친화국에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① 의안번호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년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번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① 의안번호 : 기획조정과 일괄 기재 ②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년월일 : 기획조정과 일괄 기재 ③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번번호 사용, 기획조정과 일괄 기재 기획조정과장 심사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유형
 - 인용 규정의 변경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인용 용어 변경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미반영 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훈 령]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세무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규정이 유명무실화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당규정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76호

서울특별시 중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복무·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구 본청의 각 부서, 보건소, 사업소,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등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채용과 근로계약

제4조(채용 원칙) ①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매 회계연도 9월 말까지 인사담당 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 계약 연장,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채용절차) 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근로조건,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시에는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로계약) ① 부서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사용부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제8조(근로자 명부의 작성 등)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부서장은 근로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상의 의무

제11조(직무 명령의 준수 등) 기간제 근로자는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제12조(청렴의 의무)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품위 유지)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 업무의 의무)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15조(근로시간) 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부서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부서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휴게시간) 부서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

제17조(휴일) ① 기간제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② 부서장은 직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4시간 전까지 통보한 후 근로일 또는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 ① 부서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경조사휴가)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공가)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그 밖에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병가) ①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기간제 근로자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④ 병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병가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출산휴가 등) ① 부서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생리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절 복무관리

제23조(결근 및 지각) ① 기간제 근로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의 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③ 질병이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조퇴와 외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 또는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출장)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6조(퇴직) 기간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 1.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퇴직 일자
- 2.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수리한 날. 이 경우 부서장은 업

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기간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

제27조(해고) ①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제47조에 정한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4.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28조(해고통지) ①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임금 등

제29조(임금의 구성항목 등) ①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규정에 따라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예산부서의 장과 사용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예산부서의 장 등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특성, 시중노임단가, 유사직종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 근로자가 제15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간 외 근무상황부에 기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무 내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공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 근로자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2조(사회보험)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33조(남녀고용평등) ① 기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모집·채용·승진·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은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배치 등) 기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교육·배치 등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재계약과 해고) 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과 해고 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여성인 기간제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계약해지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성희롱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3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기관 내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8.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부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부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41조(안전과 보건관리) ①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안전용품)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안전용품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모든 직원은 화재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위함과 동시에 부서장 및 담당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교육)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보상을 행한다.

제7장 표창과 징계

제46조(표창) 기관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한다.
2. 견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경위서를 받는다.
3. 감봉 :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1회의 감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내,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1 이내로 한다.
4. 정직 :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 : 해고 처분한다.

제48조(징계사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의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7. 부서장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49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재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 대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징계 대상 기간제 근로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 ⑧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8장 교육훈련

제50조(교육훈련) 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제4조, 제5조)
 - 사용기간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용(제6조 ~ 제10조)
 - 근로기간, 근로조건,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규정
-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과 휴식(제15조 ~ 제22조)
 - 근로시간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공가, 병가 등 부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전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7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전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일괄개정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는 여러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전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전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중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생활도시친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심재생과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6급 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청장(총무과장)”을 “구청장(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에게”를 “행정지원과장에게”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도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을 “도심재생과장, 가로환경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중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통계사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산정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별지제1호 중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별표1 중 “문화체육과”를 “기획조정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총무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별표1 중 “6급 이하 공무원”은 삭제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자료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유형
 - 인용 규정의 변경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인용 용어 변경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미반영 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오탈자 정비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71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
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에
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시행(2021.1.1.)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 조례를 제정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실시 의무 관련 사항, 교육 내용, 연 교육 시간, 교육 통지 등 규정 마련
- 다. 교육강사, 교육유탁, 교육실시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제11조)
- 라.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 마. 교육 이수자 관리 및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2조)
- 바.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 02-3396-4604, 팩스 : 02-3396-8627, email : ljhui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②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로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참석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시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장소)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중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밖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교육일시: . . . : ~ : (시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직인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1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5-4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14-3	2021. 9. 29.	신청에 따라 다산로36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